

법령 변경 정보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지난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소재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로 건축물 외벽 마감재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되어 관련 건축법규가 개정되어 왔고, 최근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으로 개정·공포되어, 건축물 외벽마감재에 대한 관련기준의 변경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규제에 대한 관련 건축법규(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피난·방화규칙 및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 개정내용 [요약]

-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 ▶ 상업지역내의 다중이용업소로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상업지역내의 공장인근 6미터 이내의 건축물
 - ▶ 고층건축물
- 규제 대상 건축물의 외벽재료 난연성능 [피난규칙]
 - ▶ 준불연재료 이상
 - ▶ 단,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가능
- 화재 확산 방지구조 [국토해양부고시]
 - ▶ 수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화재확산방지재료"로 밀실하게 채운 것
 - ▶ 화재확산방지재료
 - 방화석고보드 (12.5mm 이상)
 - 석고 시멘트판 또는 섬유강화 시멘트판 (6mm 이상)
 - 미네랄울 (암면, 101K 이상)
 - 내화성능재료 (15분 이상)
- ☞ 상업지역내의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6미터 이내에 공장이 있는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은 외벽마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단, 고층건축물의 경우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한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로 할 수 있음)

■ 개정내용 [본문]

□ 건축물의 마감재료

- 적용범위
 -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존>
 - ▶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신설 2009.12.2>
- 관련조문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규제 대상 건축물

- 대상 건축물
 - ▶ 상업지역내의 다중이용업소로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상업지역내의 공장인근 6미터 이내의 건축물
 - ▶ 고층건축물
- 관련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제2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2.3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고층건축물

□ 규제 대상 건축물의 외벽재료 난연성능

- 외벽재료의 난연성능
 - ▶ 준불연재료 이상
 - ▶ 단,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로 할 수 있음
- 관련조문 [피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
[제5항]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12.3.17>

□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한 「화재 확산 방지구조」

- 구조 개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화재확산방지재료”로 밀실하게 채운 것(붙임 :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참조)
- 설치 방법
화재확산방지재료를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설치
- 화재확산방지재료
 - ▶ 방화석고보드 (12.5mm 이상)
 - ▶ 석고 시멘트판 또는 섬유강화 시멘트판 (6mm 이상)
 - ▶ 미네랄울(암면, 101K 이상)
 - ▶ 내화성능재료 (15분 이상)
- 관련조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4호, 2012.9.20) 제7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 이상 밀

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시행 2012.9.20>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焰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참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국토부고시 제7조 관련]

